



시 보



제1444호 2020. 6. 15.(월)

고 시

-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----- 2

공 고

-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----- 13
-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----- 14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고시 제2020-164호
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「주택법」 제15조 제6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6. 15.

목 포 시 장

1. 사 업 명 : 목포 석현동 라송센트럴카운티 5차아파트
2. 사업주체
 - 성 명 : 라송산업(주) 대표 송성민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, 여의도동 대영빌딩
3. 사업승인 개요
 - 위 치 :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180번지 외 1필지
 - 규 모 : 9동, 지하1층/지상17층~25층, 756세대, 연면적 108,305.1644m²
 - 공급유형 : 임대
4. 사업계획승인일 : 2018. 04. 30.
5. 착공예정일자 : 2018. 05. 29.
6. 준공예정일자 : 2020. 08. 31.
7.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면적	대지면적 34,130.0m ²	대지면적 34,156.2m ²
	연 면 적 108,290.7571m ²	연 면 적 108,305.1644m ²
	조경면적 11,635.54m ² (34.10%)	조경면적 11,367.07m ² (33.28%)
건폐율/용적률	건폐율 18.08% / 용적률 241.54%	건폐율 18.06% / 용적률 241.40%

8. 기 타

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라 「주택법」 제19조에 의거 다른 법률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·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

9.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: 붙임1

[붙임1]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14	석현 지구단위계획구역	목포시 석현동 일원	180,815	감)822.8	179,992.2	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 적(m ²)	변 경 사 유
변경	14	목포시 석현동 일원	179,992.2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적확정측량 반영 및 공공공지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
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- 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180,815	감) 822.8	179,992.2	100.0	
주 거 지 역	180,735	감) 742.8	179,992.2	10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124,134	감) 27.0	124,107.0	69.0	
제2종일반주거지역	42,326	감) 715.8	41,610.2	23.1	
준 주 거 지 역	14,275	—	14,275.0	7.9	
자 연 녹 지 지 역	80	감) 80.0	—	—	

※ 용도지역 변경사유 :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감소

3. (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4. ○ 방재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지구명	위 치	제한내용	면 적 (m ²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하당지구	석현동 석현들 일원	—	1,002,500 (180,815)	전남고시 제2000-129 호 (2000.7.5.)	

주 : ()는 지구 내 면적임

5. 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6. (1) 교통시설

7. 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1	3	35	주간선 도로	4,430	대1-1 석현동 511-4도	하구둑 옥암동 946도	일반 도로	25호 광장	전남고시 제1996-264호 (1996.9.5.)	
기정	중로	1	51	20	집산 도로	227	대1-1 석현동 503-16수	농수산물 도매시장 석현동 1128-44구	일반 도로	-	목포시고시 제2003-99호 (2003.12.27.)	
기정	중로	1	73	20	집산 도로	296	중1-51 석현동 1054-7답	중3-77 석현동 555-9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2010-89호 (2010.4.5.)	
기정	중로	2	1	15	국지 도로	288	대1-1 석현동 746-13도	소3-1 석현동 1128구	일반 도로	-	1976년 이전	
기정	중로	2	64	15	국지 도로	246	대1-3 석현동 1100-2도	대1-3 석현동 1039-5도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.89호 (2010.4.5.)	
기정	중로	3	76	12	국지 도로	213	중1-51 석현동 1050-3답	중2-64 석현동 1039-2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.)	
기정	중로	3	77	12	국지 도로	45	대1-3 석현동 553답	중1-73 석현동 555-9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.)	
기정	소로	1	296	10	국지 도로	148	대1-1 석현동 624-5전	석현동 1056-7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.)	
기정	소로	1	300	11	국지 도로	13	중2-64 석현동 1039-5도	대1-3 석현동 1039-5도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.)	
기정	소로	2	608	8	국지 도로	65	농수산물 도매시장 석현동 1041-1답	중3-76 석현동 1040-2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.)	
기정	소로	3	1	7.5	국지 도로	132	중2-1 석현동 1128구	완충녹지 석현동 1128-13철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.)	
기정	소로	3	2	6	국지 도로	70	소1-296 석현동 1060답	학교 석현동 1060답	일반 도로	-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.)	
변경	소로	3	496	6	국지 도로	287	중2-1 석현동 1068-2답	소1-296 석현동 1128-5잡	일반 도로	-	"	
기정	소로	3	459	6	국지 도로	230	중2-64 석현동 1038장	중3-77 석현동 553답	일반 도로		목포시고시 제2014-29호 (2014.2.13.)	

※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반영(제2020-151호, 2020.5.28.)

8. ○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74	주차장	석현동 1047-2답 일원	1,166	-	1,166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.)	

9. ○ 철도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		연장 (m)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점	중 점	주 요 경과지				
기정	1	철도	일반철 도 (본선)	목포시 경계	목포시 호남동 1-1	임성리역, 석현공원, 목포체육 관,목포역	6,290 (460)	215,938 (5,570)	목포고시 2008-42호 (2008.6.13)	

주 : ()는 지구 내 면적 및 연장임

10. (2) 공간시설

11. ○ 광장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 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4	광장	교통 광장	목포시 석현검문소 앞 (석현동 국도분기점)	675	-	675	전남고시 제1985-83호 (1985.5.17)	

12. ○ 녹지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6	녹지	완충 녹지	호남선 복선화 철도변	32,880	-	32,880 (9,190)	전남고시 제2000-129호 (2000.7.5)	

주 : ()는 지구내 면적임

13. ○ 공원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120	공원	소공원	석현동 1039-5도 일원	448	-	448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기정	121	공원	소공원	석현동 1128-2구 일원	2,338	-	2,338	전남고시 제2010-89호 (2010.4.5)	

14. ○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10	공공공지	석현동 1083-1답 일원	2,905	감)849	2,056	목포시 고시 제2018-64 호 (2018.5.14 .)	

15. ○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0	공공공지	- 면적 변경 - 기정:2,905㎡ → 변경:2,056㎡, 감)849㎡ - 위치(지번) 변경 - 기정:석현동 1083-1답 일원 → 변경:석현동 1083-5답 일원	- 임성천 소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구거부지 제척에 따른 공공공지 축소 - 지적분할에 따른 위치(지번) 변경

16. (3) 유통 및 공급시설

17. ○ 시장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5	시장	농수산물 도매시장	목포시 석현동 1086-1 일원	14,275	-	14,275	목포시고시 제2003-24 4호 (2003.12.1 7)	

18. (4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19. ○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67	학교	초등 학교	목포시 석현동 1060 일원	12,307	감)12,307	-	목포시고시 제2003-2 호 (2003.1.9)	

※ 2025년 목포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 반영(제2020-151호, 2020.5.28.)

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20. 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21. ○ 기 정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
A1	A1	18,574	석현동 560-1대 일원	18,574	자율적 공동개발 권장
A2	A2	17,747	석현동 1035-1답 일원	17,747	
A3	A3	2,956	석현동 1054-1답 일원	2,956	
A4	A4	5,861	석현동 1045-2답 일원	5,861	
A5	A5	8,349	석현동 1041답 일원	8,349	
A6	A6	646	석현동 1085-5철 일원	646	
A7	A7	5,785	석현동 1058-3잡 일원	5,785	
A8	A8	8,196	석현동 1059대 일원	8,196	
A9	A9	851	석현동 563-5도 일원	851	
A10	A10	88	석현동 1056-7답 일원	88	
B1	B1	14,275	석현동 1086-1대 일원	14,275	—
C1	C1	34,130	석현동 1066-1답 일원	34,130	—

22. ○ 변 경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적(㎡)	
A1	A1	18,574	석현동 560-1대 일원	18,574	자율적 공동개발 권장
A2	A2	17,747	석현동 1035-1답 일원	17,747	
A3	A3	2,956	석현동 1054-1답 일원	2,956	
A4	A4	5,861	석현동 1045-2답 일원	5,861	
A5	A5	8,349	석현동 1041답 일원	8,349	
A6	A6	646	석현동 1085-5철 일원	646	
A7	A7	5,785	석현동 1058-3잡 일원	5,785	
A8	A8	18,408	석현동 1059대 일원	18,408	
A9	A9	851	석현동 563-5도 일원	851	
A10	A10	88	석현동 1056-7답 일원	88	
A11	A11	724	석현동 1061-4답 일원	724	
B1	B1	14,275	석현동 1086-1대 일원	14,275	—
C1	C1	34,156.2	석현동 1066-1답 일원	34,156.2	—

23. 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24. ○ 기 정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고
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	A1~A10	용도	허용 용도	•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 도를 제외한 용도
			권장 용도	• 공장중 인쇄업, 기록매체복제업, 봉제업, 컴퓨터 및 주변 기기제조업,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,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 니하는 것
			불허 용도	• 교정 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
		건폐율	• 60% 이하	
		용적률	• 200% 이하	
		높 이	• 4층 이하	
		배 치	•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, 채광,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,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 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	
		형 태	• 지붕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 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 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 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(높이 1.2m 이하) • 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 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 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
		색 채	•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유형(type)을 사용하도록 유도	
		건축선	—	
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	C1	용도	허용 용도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
			불허 용도	•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, 제14호 복리시설
		건폐율	• 30% 이하	
			• 245% 이하	
		높 이	• 25층 이하	
		배 치	• 채광, 일조, 쾌적성을 감안한 향 배치	
		형 태	• 지붕 :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조형 적 형태의 지붕 권장	
			• 담장 :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투시형 담장 및 조경 담 장 계획	

주 :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고
준 주 거 지 역	B1	용도	허용 용도	•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에서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
			권장 용도	• 판매시설
			불허 용도	• 교정 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
		건폐율	• 70% 이하	
		용적률	• 500% 이하	
		높 이	—	
		배 치	•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, 채광,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,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	
		형 태	• 지붕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 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(높이 1.2m 이하) • 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
		색 채	•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(type)을 사용하도록 유도	
		건축선	—	

주 :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

25. ○ 변 경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	비고
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	A1~A11	용도	허용 용도	•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허용 도를 제외한 용도	
			권장 용도	• 공장중 인쇄업, 기록매체복제업, 봉제업, 컴퓨터 및 주변 기기제조업,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,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아 니하는 것	
			불허 용도	• 교정 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	
		건폐율		• 60% 이하	
		용적률		• 200% 이하	
		높 이		• 4층 이하	
		배 치		•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, 채광,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,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 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	
		형 태		• 지붕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 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 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 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 (높이 1.2m 이하) • 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 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 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
		색 채		•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고 있는 유형(type)을 사용하도록 유도	
		건축선		-	
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	C1	용도	허용 용도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•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, 제14호 복리시설	
			불허 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폐율		• 30% 이하	
		용적률		• 245% 이하	
		높 이		• 25층 이하	
		배 치		• 채광, 일조, 쾌적성을 감안한 향 배치	
		형 태		• 지붕 :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심미성 증진을 위하여 조형 적 형태의 지붕 권장 • 담장 :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투시형 담장 및 조경 담 장 계획	

주 :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비고	
준 주 거 지 역	B1	용도	허용 용도	•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에서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	
			권장 용도	• 판매시설	
			불허 용도	• 교정 및 군사시설, 발전시설	
		건폐율	• 70% 이하		
		용적률	• 500% 이하		
		높 이	—		
		배 치	•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, 채광, 통풍 등을 고려하여 동향 또는 남향의 배치를 권장하고,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함		
		형 태	• 지붕형태 : 경사지붕을 하되, 30% 범위 이내에서 평지붕을 허용하도록 하며, 이 경우 옥상층에는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옥상녹화를 권장(지붕구배는 3/10 이상, 7/10이하) • 담장 및 대문 :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 친환경적인 재료(높이 1.2m 이하) • 건축물 외벽의 재료 : 건축물 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 :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		
		색 채	•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, 별도의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(type)을 사용하도록 유도		
		건축선	—		

주 : 상기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참조

목포시 공고 제2020 - 984호

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

목포시 및 산정공원개발(주)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『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아울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6. 15.

목 포 시 장**1. 사업의 개요**

- 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시설(공원)
- 나. 사 업 명 : 목포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
- 다. 사업의 위치 : 목포시 연산동 산45-4번지 일원
- 라. 사업의 규모 : 471,457㎡(공원시설 346,129.18㎡ / 비공원시설 125,327.82㎡)
- 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
 - 목포시장 : 목포시 양을로 203
 - 산정공원개발 주식회사 : 목포시 영산로87번길 9, 2층(명륜동)

2. 토지의 출입통지 사항

- 가. 출 입 자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토지 출입 증표 소지자
- 나. 출입기간 : 공고일 5일 후부터 ~ 사업종료 시 까지
- 다. 출입목적 :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(지장물)조사, 감정평가, 측량, 공사관련 등
- 라. 출입할 토지구역 : 별첨 토지 구역도(지적도) 참조
 - ※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 통지

3. 문의처

-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(☎061-270-3634)
- 산정공원개발 주식회사 보상팀(☎061-243-0026 / 팩스 061-243-1555)

4. 기 타

- 가.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·담 등으로 둘러 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
- 나. 사업시행자는 측량·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 - ※ 주소불명 등 미송달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출입대상 토지의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.

목포시 공고 제 2020-1009호

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6. 15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상위법인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」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9조(주민협의회의 운영)제4항 삭제 : 법률의 위임 없는 사항 삭제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

6. 관련부서 의견

- 규제대상(법무혁신담당) : 해당없음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 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7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: 2020. 6. 15. ~ 7. 6.(21일간)

9. 사전협의 사항

- 해당없음

10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6일까지 목포시장(건설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건설과

다. 제출 방법 : 우편, 직접방문 등

11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건설과(☎ 061-270-86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**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주민협의회 운영) ④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,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.	<삭 제>

[관계 법령]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4조의2(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)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(이하 "자율관리구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·크기·색깔,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6. 1. 6., 2017. 7. 26.>[본조신설 2011. 3. 29.]

□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7조(주민협회의 운영) ① [제26조](#)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[법 제4조의2 제3항](#)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③ 주민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
2. 광고물등의 유지·관리 및 감시 활동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 [조례](#)로 정하는 사항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[조례](#)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 7. 9.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